

-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개정 이유

-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방안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납세 의식의 향상과 세수 증대에 기여
- 노상주차장에 대한 1일 주차요금 및 월 정기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주차장 이용 편의 제공.

3. 주요내용

- 공무수행중인 시 소유 차량 : 면제(제4조의2 제5호)
- 국·지방세 성실납세자로 포상을 받은 납세자 소유차량 중 성실납세 자증 표시(스티커) 부착차량 : 1년간 면제(제4조의2 제6호)
- “노상주차장은 1일 주차요금 및 월 정기주차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”를 삭제(【별표 1】 제2호)

4. 참고사항

- 대통령 지시말씀('98. 4. 14)
- 다른 시 주차장 조례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 조례안은 주차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추가 지정하고, 현행 조례 시행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- 신설하는 제4조의2 제6호는 성실납세자와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사람을 대우해 주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('98. 4. 14)에 따라 국세청의 성실납세자 우대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도로써,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한 사항입니다.
- 구미시민중 국·지방세 성실납세자로 포상을 받는 자는 연간 30명 미만이며 또한 포상자 대부분이 기업가로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혜택은 보잘것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, 고질체납자, 세금탈루, 탈세자가 적지 않은 가운데 성실납세자에 대한 주차료 감면은 인정감 부여와 자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건전 조세제도 조기정착에 기여함이 크다고 사료됩니다.
- 기타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